

재난관리(방재안전분야)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5조의2, 「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재난관리(방재안전분야) 석·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「재난관리(방재안전분야)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」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일

행정안전부장관

1. 사업 배경 및 목적

가. 사업의 배경

-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상이변과 도시의 노후·인구과밀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요구 증가
- 반면,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시급

나. 사업의 목적

-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석·박사급 전문인력 배출
- 석·박사급 전문인력의 정부·지자체·재난관리책임기관·민간분야 등으로 진출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 도모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내용

- **(사업기간)** 2년(4학기, '22. 9. 1. ~ '24. 8. 31.*)
 - ※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
 - * 1차연도 : '22. 9. 1. ~ '23. 8. 31., 2차연도 : '23. 9. 1. ~ '24. 8. 31.
- **(선정규모)** 4개 대학(방재안전분야)
- **(지원금액)** 대학당 연간 1.5억원, 총 3억원 지원 예정*
 - *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·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(사업비의 ±15%)
- **(지원대상)*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·박사 학위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, '22년 2학기부터 교육·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
 - 대학교 단위로 응모(필요시 학과간 연계(2개 학과)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, 소방관련 학위과정 제외)
- **(지원항목)** 「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」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(운영인력 등), 교육비(교재·기자재·장학금 등), 운영비 등
 - ※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

나. 지원 조건

- **(필수 교과목)** 재난관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목 12학점 이상 운영

《 필수 교과목 》

방재안전관련 교과목 (9학점 이상)	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, 위기관리론, 방재관련법규, 도시방재학 방재정책론, 재난경제학
기업재난관리 관련 교과목 (3학점 이상)	재해경감활동 이해, 업무연속성 계획론, 업무영향분석 및 위험평가론, 기업리스크관리 연구, 업무연속성계획 실습

※ 교육내용(안)을 바탕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교과목까지 폭넓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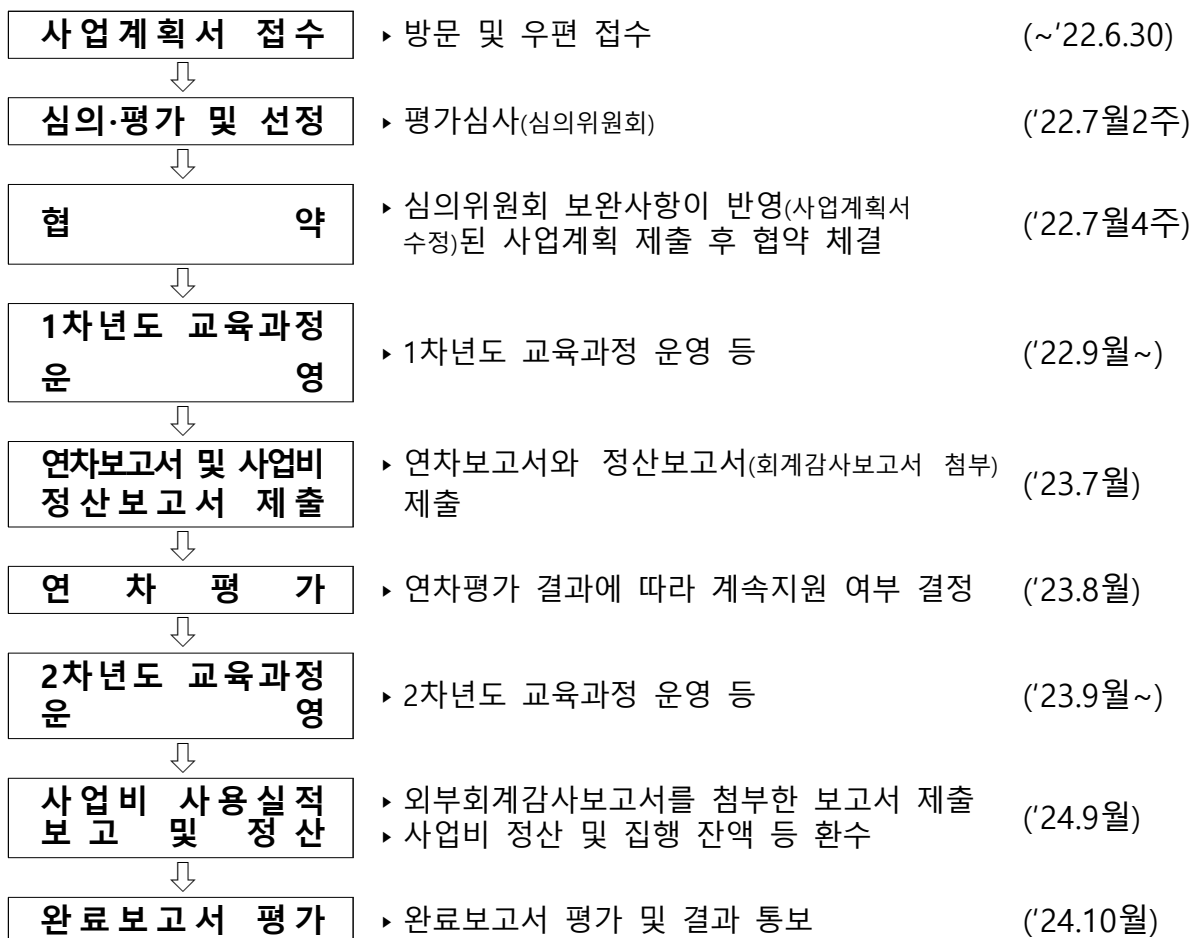
- (논 문) 방재안전 관련 분야 학위논문 제출, 학술지 학술논문 게재,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
- (인 력) 전임교수 1명 이상 필수 확보
- (사 업 비) 국고보조 70%, 민간부담금(현금 또는 현물) 30%

3. 선정계획

- (선정방법)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
※ 심의·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
- (선정기준)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
※ (가점) 신규 대학 10점, 완료평가 결과 "우수"대학 5점
(감점) 기존 3회(6년간) 이상 지원 받은 대학의 경우 "자립화 계획" 관련 0점 부여
- (결과발표) 개별통보

4. 사업일정

* 사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

5. 신청방법

- (제출기한) 2022년 6월 30일, 18시
※ 4개 기관 미만 신청 시 재공고(10일)
- (제출서류)
 -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(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)
 - 재난관리(방재안전분야)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
 -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*(원본 1부, 복사본 14부)
*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
 - 사업계획 발표 자료(PPT) 15부(자유서식 : 발표분량 10분 이내)
 -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(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)
※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(hwp) 및 발표자료(ppt)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
- (접수방법) 우편* 또는 방문 접수(전자파일 제출 : ckrkgsyong@korea.kr)
*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, '22년 6월 30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
- (접수장소) [우30128]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행정안전부 17-2동, 531호(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)

6. 기타사항

-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 부담
-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*를 참고
* 「<http://www.mois.go.kr> → 뉴스소식 → 새소식 → 알립니다」에 게시
-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(044-205-5120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